

## 자산배분에 관한 기준

주 관 팀	주식운용팀, 채권운용팀
제정일자	2008년 8월 18일
개정일자	2009년 2월 2일 2015년 7월 28일

### 제 1 장 총 칙

**제 1 조(목적)** 이 기준은 BNK 자산운용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7.28>

**제 2 조(적용범위 및 대상자산)** ① 이 기준은 투자신탁재산을 각 투자신탁에 배분할 경우에 적용하며, 대상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 80 조제 1 항 및 동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상장증권, 장내파생상품, 단기대출, 금융기관이 발행·할인·매매·중개·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, CD,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,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, Swap 등으로 한다. <개정 2009.1.29>

② 회사는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명의(투자익명조합의 경우에는 회사의 명의를 말한다)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하고,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게 취득·처분 등을 한 자산의 보관·관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회사가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그 집합투자기구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09.1.29>

**제 3 조(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)**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.

**제 4 조(용어의 정의)**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## 자산배분에 관한 기준

---

1. "사전자산배분" 이라 함은 법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한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09.1.29>
2. "운용담당자" 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직원을 말한다.
3. "매매담당자" 라 함은 운용담당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하여 직접 자산의 취득, 매각 등을 실행하는 직원을 말한다.
4. "매매주문서" 라 함은 투자대상자산의 주문금액, 가격, 수량 등을 기재한 취득·처분 등의 주문서를 말한다. <신설 2009.1.29>

## 제 2 장 자산배분

**제 5 조(자산배분원칙)** ① 운용담당자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투자신탁별 사전자산배분을 함에 있어 특정 수익자 또는 특정 투자신탁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회사는 법 제 80 조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·처분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1.29>

**제 6 조(자산배분절차)** <개정 2009.1.29> ① 투자신탁별로 취득 또는 처분할 자산에 대하여 매매이전에 배분하고 제 10 조의 매매주문서를 작성하여 매매담당자에게 전달한다.

② 투자신탁별로 취득 또는 처분한 자산을 균등한 가격으로 투자신탁별로 배분하는 것은 다수의 투자신탁에 대하여 동일계좌를 사용하여 동시에 주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,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의 주문은 별개의 주문으로 본다.

③ 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결과를 투자신탁별로 배분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

1. 취득·처분한 자산을 균등한 가격으로 배분할 것
2. 취득·처분한 자산의 수량이 취득·처분 등의 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한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배분할 것

④ 동일한 종목에 대한 투자신탁별 배분은 동일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주문접수순으로 한다.

⑤ 투자신탁별로 매매주문서와 상이한 수량으로 배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고,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## 자산배분에 관한 기준

---

1. 법규 등(집합투자규약, 운용계획서 포함)의 위반 및 위반 방지를 위한 체결수량 정정 또는 투자신탁정정
2. 매매체결 후 예상치 못한 중대한 설정고 증감으로 인한 체결수량정정 또는 투자신탁정정
3.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운용본부장 및 준법감시인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

**제 7 조(수요예측 및 입찰을 통한 배분)** ①공모주 등 수요예측을 통한 자산취득의 경우 운용담당자가 사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신탁을 선별한 후, 당해 투자신탁에 한해 청약일에 투자신탁별로 안분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09. 1.29>  
②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그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수요예측을 통한 운용이 50% 이상임을 명기한 경우에는 해당투자신탁에 배분신청수량을 우선적으로 안분배분한다. <개정 2009.1.29>  
③입찰을 통한 자산취득의 경우 입찰일 당일 해당 투자신탁에 배분한다.

**제 8 조(사전자산배분에 관한 기준의 공시)** 회사는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한다.

## 제 3 장 자산배분명세에 관한 장부 및 서류

**제 9 조(자산배분명세에 관한 장부 및 서류)** <개정 2009.1.29> ①운용담당자는 자산의 취득, 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취득·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자산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매매주문서와 배분명세를 기재한 자산배분명세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. 매매주문 또는 배분명세를 정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 
②매매주문서 및 자산배분명세서는 전산으로 기록·유지되어야 하며, 준법감시인은 동 매매주문서 및 자산배분명세서의 적정성과 이행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.  
③자산배분명세서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 6 조제 5 항 각호의 1 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한하여 가능하며, 전산으로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

## 제 4 장 매매주문서의 작성 및 매매주문의 집행

**제 10 조(매매주문서의 작성)** ①운용담당자는 투자신탁별로 종목명, 주문금액 또는

## 자산배분에 관한 기준

---

수량, 가격, 배분시간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를 전산상에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산주문시스템의 작동불능,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담당자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서면 또는 구두로 작성할 수 있으며, 전산시스템이 정상화되는 즉시 주문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09.1.29>

②매매주문서상의 종목은 특정종목,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채권종류별 및 신용등급별 종목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9.1.29>

③매매주문서상의 주문가격은 해당자산의 단가 혹은 수익률 등으로 표시되며, 지정가격 및 시장가격 뿐만 아니라 범위를 정하여 매매담당자에게 매매가격을 일임하거나, 범위지정 없이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할 수 있다. 이때 별도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위지정 없이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한 것으로 본다.

④제 1 항 내지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주문시 투자신탁별로 주문계좌를 지정하여 다수종목에 대한 매매주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종목 및 주문수량만을 작성하고 매매금액 및 가격 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**제 11 조(매매주문의 집행)** 매매담당자는 사전에 작성된 매매주문서를 기초로 하여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.

## 제 5 장 자산배분 및 자산배분명세서 작성

**제 12 조(자산배분명세서의 작성)** ①매매담당자는 매매주문서와 체결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자산배분명세서를 전산상에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1.29>

②자산배분명세서에는 체결된 종목에 대하여 체결가격, 배분가격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. 다만, 전산상으로 각 체결단가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배분할 경우에 체결가격과 배분가격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09.1.29>

③투자신탁별로 매매주문서와 상이한 수량으로 배분될 시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.

## 제 6 장 운용과 매매의 분리 등

**제 13 조(검직금지)** 회사는 공정한 자산배분등 수익자의 보호를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직접 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

## 자산배분에 관한 기준

---

직원이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법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<개정 2009.1.29>

1. 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취득·처분 등 <신설 2009.1.29>
2. 투자신탁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이루어 지는 매매거래
3. 프로그램매매
4. 장내파생상품 거래.

제 14 조(기준의 변경) 이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 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<신설 2009.1.29>

제 15 조(공시) 회사는 이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09.1.29>

### 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08 년 8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09 년 2 월 4 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5 년 7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.